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1 선고 2021가단2128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81,8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1. 6. 1.부터 별지 재고수량 기재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695,80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이 사건 가설재를 인도하고, 인도에 관한 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32,138,5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8.경 E과 사이에 양주시 F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가설건축자재(씨스템동바리)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2015. 6.경 주식회사 G에 위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채 철수하였고, 2018. 7.경 이 사건 공사현장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2018. 8.경 위 토지를 낙찰받았다.

다. 피고 B은 2019. 9.경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20. 3. 31.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중 건물 지하 2층에 설치되었던 자재를 인양하여 따로 보관하여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물건이 있다면 가져가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E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남아있던 원고 소유의 건축용 가설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들은 2020. 3.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의 건축용 가설재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여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 3.부터 2021. 5.경까지 임대료 상당 38,481,8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1. 6. 1.부터 이 사건 가설재 인도시까지 매월 695,805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가설재 인도청구 및 대상청구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가설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가설재에 대하여 시가에 상당하는 돈인 32,138,5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9호증, 을가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E과 건축용 가설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들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 주장과 같은 가설재를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2015. 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축용 가설재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B은 그로부터 3년 후인 2018. 8.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부지를 낙찰받아 2019. 9.경에서야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던 점, ④ 피고 B은 2020. 9. 18.경 원고에게 피고들 사이의 공사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C에 반입한 자재를 반출해가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었는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⑤ 이후 피고 B은 관련 가설재를 모두 인양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에 적치해두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건축용 가설재를 임의로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건축용 가설재를 임의로 사용수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가설재 인도청구 및 대상청구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 부지를 낙찰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C와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가설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건축용 가설재를 임대한 상대방은 E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 건축용 가설재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E의 반환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민

재고수량

양주시 오서스빌현장

품명	최초 출 고수량	2016년 9 월 관결수 량	2020. 6. 17. 일고	2021. 5. 13. 일고	현재재고 (명실) 수량	2016년 9월 관결시 명실 단가	금액	비고
각관 3.0M/75*125*3.0M	174	120	95	7	18	30,000	540,000	
각관 2.0M/75*125*2.0M	225	132	39	84	9	20,000	180,000	
각관 1.0M/75*125*1.0M	61	61	5	31	25	9,500	237,500	
각관 1.5M/75*125*1.5M	265	265	33	87	145	15,500	2,247,500	
각관 2.5M/75*125*2.5M	94	94	88	35	-29			부
각관 2.0M(특)/75*125*2.0M(특)	100	100	52	0	48	20,000	960,000	
SSC 수직재P-17/60.5*1725	2,708	2,708	14	2219	475	15,900	7,552,500	
SSC 수직재P-12/60.5*1291	308	273	237	21	15	13,500	202,500	
SSC 수직재P-08/60.5*863	240	240	62	870	-892			부
SSC 수직재P-03/60.5*324				4	-4			부
SSC 수직재P-02/60.5*216	15	15		636	-621			부
SSC 수직재P-04/60.5*432	266	266	52	578	-364			부
SSC 대각재BRACING/B-1712	100	100	1	96	3	15,000	45,000	
SSC 대각재BRACING/B-1709				22	-22			부
SSC 수평재H-18/L:1750mm	222	222	106	6	110	11,000	1,210,000	
SSC 수평재H-12/L:1158mm	3,042	2,930	2,280	571	79	6,100	639,900	
SSC 수평재H-09/L:853mm	908	908	100	47	761	6,900	5,250,900	
SSC 수평재H-06/L:549mm	1,185	1,185	357	36	792	5,800	4,593,600	
SSC 카프링/60.5*120	1,128	1,128		194	934	900	840,600	
SSC 파기베이스/43Φ*600L	1,128	1,128		961	167	8,900	1,486,300	
SSC U-헤드/200W600L	1,454	1,290	3	1115	178	10,800	1,922,400	
SSC 수평재H-15/L:1463mm	1,302	1,128	669	13	446	9,300	4,147,800	
SSC 브리스/1524L	118	118	114	2	2	41,000	82,000	
SSC 수평재H-03/L:244mm				58	-58			부
계							32,138,500	

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가합956 사용표 사건 판결문 별지1의

2016년 9월 2일 관결수량 및 단가 적용.

② 마이너스(-)수량은 과입고 자재로, 피고들이 원고의 자재를 사용하다 부족한 자재를
(주) 이라는 타 업체서 반입하였으나 상도위상(주) 에 둘러쌀 자재임.

